

선	기관의 장
람	



제 702 호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1호(인천광역시남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
참여감독대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2호(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3호(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4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 2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5호(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6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27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 62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69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65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0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69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54호(건축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7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58호(시설공사입찰공고(상인천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 7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59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탈소등록예고) 7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60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실시계획인가
를 위한 공고·열람) 7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62호(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 8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67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공개모집공고) 8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69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사완료공고) 8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71호(도립지구손실보상재결신청서열람공고) 8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72호(시설공사입찰공고(간석동소3-15호선도로개설공사)) 89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33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일해피트리)) 92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34호(늑시어선승객의준수사항고시) 9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35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GS자이)) 96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36호(인천광역시남동구개별공시지가평균고시) 97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인천광역시남동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및 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물품·용역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물품·용역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물품·용역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위촉·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 ①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련 사업 등 그에 준하는 복구 및 개·보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통장을 말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

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④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전에 제1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목적, 취지 등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임무) ①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4. 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는 공사시공사업자의 준공계 제출 후 3일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일수·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업 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 일정금액이상 또는 마을단위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지정하고 감독자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및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소집(안 제4조, 제5조)
- 소의원회 구성 (안 제6조)
-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등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안 제12조, 제13조)
- 수당 및 여비 등(안 제1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을”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기금”을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매년 적정금액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

에 해당하는 위원을 1/3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동조 제5항중 “문화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을 “기금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6조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1항중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을”을 “기금운용계획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문화홍보실장”을 “기금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제정되어 '0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개정
- 출연금의 한시적 출연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 추가(안 제6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을 구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안 제11조제3항, 안 제13조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한다)의”를 “인천광역시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장
2. 남동구의회의 소관 물품 : 구의회 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소 또는 동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로 하고,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을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로 한다.

제10조 제목 및 **제1항** 중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을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고, 후단의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으로 하고, “청·소의장의”를 “의회사무국·소·동의 장의”로 하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중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에게”로 하며 제3항 중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에게”로 하며, 제4항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의 장부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같음한다.

제26조 본문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은”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청·소의”를 “의회사무국·소·동의”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허가재무과”를 “경영재정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중 “청·소의”를 “의회사무국·소·동의”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되어 '06.1.1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운영제도의 근거 등이 변경됨으로써
-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용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을 정함(안 제2조)
- 물품운용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 함(안 제3조)
-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조항으로 정비(안 제4조, 제9조, 제27조)
- 중요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삭제(안 제11조의 2)
- 물품 관련 장부작성을 전산입력처리로 같음하는 사항 추가(안 제25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4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재산에 한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7조 (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 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

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 대부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①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액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 다만 다수의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당해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0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채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중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 관리

제49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으며, 제4호 내지 제8호는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6조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 (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보 칙

제61조 (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 (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청 및 동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구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실수확보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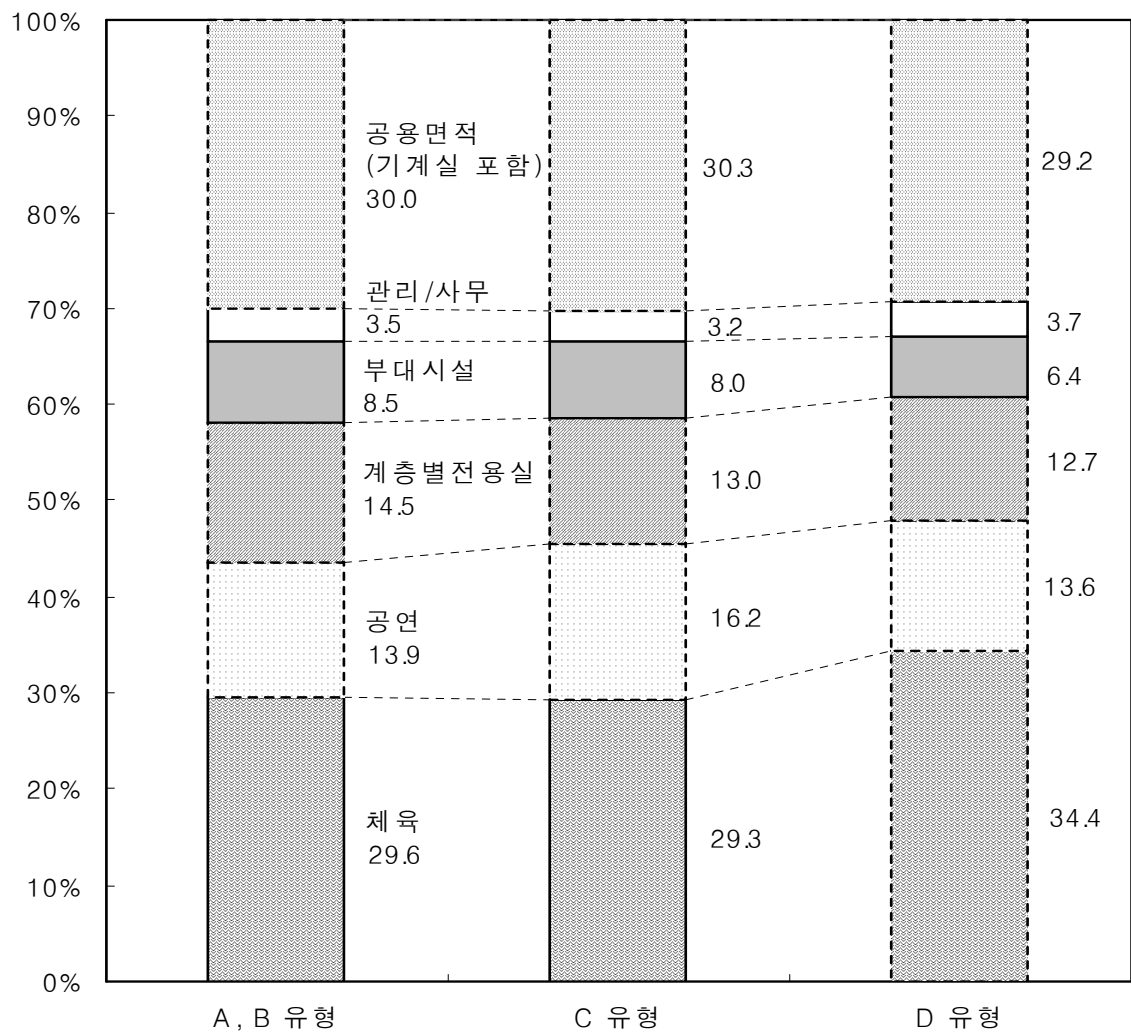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합 계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 료 활 동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²)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업무 공간	a	기관장실	동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 × 7.2	
소요 공간	b	조직배양실	82.5 내외	
		종합검정실	72.6 내외	
		가축질병진단실	36.3 내외	
		꽃가루은행	99 내외	
		여성기능교육실	66 내외	
		화상정보시스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비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	c	휴게실	직원 수 × 2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용

□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운영되어온 ‘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0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제도의 근거 등이 변경되어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공유재산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업무(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안 제28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30조)
- 대부료 및 변상금 납기사항 중 분할납부 기준(안 제34조 및 안 제62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안 제39조)
- 구의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안 제46조)
- 공유재산 합필 및 분필(안 제64조 내지 안 제65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을 “ 「식품위생법」 ”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1항 중 후단의 “기금을 설치한다”를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를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 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호 중 “식품위생법”을 “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6조(설치 및 구성) 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 관련자

제9조(위원회의 기능)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는 삭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융자 및 제외대상)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중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구청장이 매년 용자사업 계획에 의거 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 ·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용자대출 업소로서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13조(용자한도) 후단의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를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육성자금의”로 한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용자시기, 용자금액의 총액, 지원한도액, 용자기준 · 조건 및 절차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로 한다.

동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장 · 관 · 항)지출 금액의 범위 안

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운영) 제1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05.8.4 공포, ’06.1.1 시행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 위원회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추가 (안 제9조제3호)
-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안 제15조제3항)
- 용자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능)제1항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후단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심의·의결로 한다”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5항중 “사회복지담당팀장”을 “당해업무 관련 담당”으로 하고 “의약팀장”은 “의약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중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중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14조(회의수당)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 제2조제1항제6호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 안 이 유

- 「긴급복지지원법(’05.12.23공포, ’06.3.24 시행)」 제12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 및 자격을 갖춘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 대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담당팀장”을 “당해업무 관련 담당”으로, “의약팀장”을 “의약업무 담당”으로 변경(안 제3조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82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2006. 4. 28)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윤리강령(안 제2조)
- 윤리실천규범(안 제3조)
- 윤리심사 등(안 제4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6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제22조의2”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의2”로 한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중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관련)

<현행>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분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무개방기간
일반건축물 (교회,사무실 등)	- 주차노면표시 정비(구획선,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시설물 설치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200만원 까지	1년
	- 방범시설추가지원(cctv 및 출입구 차단시설) - 기타 방범 시설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400만원 까지	2년
학교 (초·중·고·대학 교 모든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총 설치비의 95%범위내 최고 1,000만원까지	2년
기본방침	- 자기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방하려는 자로서 모든개인, 단체, 기관등 - 지원대상조건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제외)		

<개정>

구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일반건축물	주차장 10면이상 개방가능한 사무실, 종교시설등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설치비 95%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600만원까지	
	방범시설 추가 지원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설치비 95%이내 400만원까지	
학 교	운동장 등 여윌공간을 20면 이상 주차공간으로 개방 가능한 초·중·고·대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설치비 95%이내, 2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	
역세권 아파트	- 주차장 20면이상 개방가능한 아파트 - 역과의 도보거리 200m이내 -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전체 주차장의 50% 미만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 등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설치비 95%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1,000만원까지	
	방범시설 추가지원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설치비 95%이내, 400만원까지	
의무개방기간		- 지원금액기준 - 200만원 이하 1년 - 2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2년 -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3년		
기개방건 물에 대한 추가보조	보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 난 건축물	- 주차구획정비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	설치비 95%, 면당 10만원(보조금 액의 50%)	
의무개방기간		- 지원금액기준 - 200만원 이하 1년 - 2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2년		

□ 제안이유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 계획’ 관련 시의 지침이 ‘06. 3.22일자로 시달되어 이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2.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중
 - 기 보조금액의 상향조정
 - 역세권아파트에 대한 확대지원
 - 기 개방건물에 대한 추가 보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7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05.12.30)되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재정공시제도로 변경되고,
- 재정공시제도 운영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가 폐지(2006. 6.23)됨에 따라
-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5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한 후 장기간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2006. 8. 9. 한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됨을 공시송달 합니다.

1. 대상 건축물

	간석동 900-84	구월동 1304-38
건축주	김두남	주우복
용 도	1종근생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건축면적/연면적/층수)	93.32㎡ /364.98㎡ /지상4층	146.83㎡ /644.35㎡ / 지하1층 지상4층
허가일	2001. 9. 1	1998. 4. 16
착공일	2002. 2. 22	1998. 5. 30

2.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 건축2팀(☎453-2784)

2006. 7.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58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상인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1동 304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개요
 - 포장공 ----- 22.4a
 - 교통표지판 설치등 ----- 19개소
 - 차선도색등 ----- 233.1 m²
- 설계금액 : ₩93,368,000원(추정가액 84,880,000원 부가가치세 8,488,000원)
- 기초금액 : ₩93,368,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07월 24일(월) 09:00~ 08월 02일(수)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08월 02일(수) 14: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W93,368,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말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84.59% 유동비율 181.3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교통과 교통기획팀(032-453-288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7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59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08. 07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07. 24 ~ 2006. 08. 07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2머6446	함응호	계양.계산동987-13호 B03	인천지방법원 (99카단39532)	이형복	인천.계양구 임학동179번 지 서원빌라 201호
인천33구5170	송경복	부평.부평동767-180 늘봄빌라 5동 B01호	수원지법안산지원 (97카단3571)	이재희	경기.안산시 선부동1082 동명(아)102-406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32)

2006. 07.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6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호선)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소로3-1호선, 사업명 : 만수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64), 건설과(☎032-453-27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당해 도로개설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7.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로(소3-1호선)
 - (2) 명 칭 : 만수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폭원(B)=6m, 연장(L)=13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0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8.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9.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62호

공 고 문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간석행복마을아파트)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 시행내역을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지적공부 시행내역

토지소재		폐 쇄			작 성			비 고
구	동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남동	간석동	591-4	잡	175	939	대	4,725.3	
		592-1	답	195				
		593-1	전	24				
		595-2	대	63				
		596	장	655				
		596-1	장	362				
		597	전	888				
		597-2	전	2,085				
		760-4	도	72				
		896-7	장	241.3				
계		10필지		4,760.3	1필지		4,725.3	

2. 지적공부 작성목록

토지소재		토지대장			지 적 도			경 계 점 좌표등록부	비고
구	동	필지수	지목	면 적	매수	축척	도호		
남동	간석동	1	대	4,725.3	1	1/500	85	1	

3. 시 행 일 : 2006. 7. 24

4. 공고기간 : 2006. 7. 24 ~ 2006. 31(7일간)

5.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민원지적과 032-453-24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67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공개모집공고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참신하고 능력있는 이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이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및 복리증진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조직의 혁신을 주도할 경험과 능력으로 경영합리화를 이룰수 있는자

5.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3년 계약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7.26(수) ~ 2006.8.9(수), 17:00까지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 032-453-2259
 - 접수처 : (405-702)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88(만수6동1008번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 양식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에서 다운로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최종학력 증명서 1부(1차 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1차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각 1부(1차 합격자 및 소지자에 한함)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합격자는 2006년 8월 17일 유선 및 개별 서면 통보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별면접 실시
- 면접시험 일시 : 2006. 8. 18(금) 14:00
-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년 8월 31일(개별 서면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시험 방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032-453-2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 호	-					
		주 소						
		전 화	[주택]() - [직장]() -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①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②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③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④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⑤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6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9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7.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주차장
 - (2) 명 칭 : 만수3동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 A=325.5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만수동지역주택조합 이용길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8번지
5. 공사완료일 : 2006. 07. 10
6. 첨 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71호

도림지구손실보상재결신청서열람공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하는 지장물권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명칭 :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36-1,2,3,6번지 일원
4. 열람기간 : 2006. 07. 28 - 2006. 08. 11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54)
6. 기타사항

지장물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 이해관계인께서는 도시계획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 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 손실보상재결신청대상 지장물재평가조서 : “별첨”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액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구조 및 규격	보상금액	
						단가	보상금액
도림동	236-1		작업장	257.48㎡	블럭및목재스레트	125,000원	32,185,000원
	236-2		주거(1층)	172.46㎡	연와조및목조기와(대문포함)	일괄	64,200,000원
			마당	1식			300,000원
			기름보일러	2대			주거에 포함평가
	236-3		가중나무외4종	5주		일괄	595,000원
	236-6		공장	240.02㎡	철근벽돌조슬라브	217,500원	52,204,350원
			작업장(2층)	166.35㎡	천막	31,000원	5,156,850원
			화장실	4.29㎡	시멘트벽돌	식	1,000,000원
			사무실	12㎡	컨테이너박스	식	300,000원
			창고(지1층)	88.13㎡	철근콘크리트	125,000원	11,016,250원
			건물계단(바깥)	19.28㎡	철근콘크리트	-	2,000,000원
	간접보상비 별도						
						합계	168,957,450원

손실받은자의 손실보상금액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구조 및 규격	보상금액	
						단가	보상금액
도림동	236-1		작업장	257.48㎡	블럭및목재스레트	217,500원	56,001,900원
	236-2		주거(1층)	172.46㎡	연와조및목조기와(대문포함)	일괄	78,253,372원
			마당	1식			1,000,000원
			기름보일러	2대			주거에 포함평가
	236-3		가중나무외4종	26주		일괄	3,900,000원
	236-6		공장	240.02㎡	철근벽돌조슬라브	393,248원	94,387,384원
			작업장(2층)	166.35㎡	천막	45,374원	7,547,649원
			화장실	4.29㎡	시멘트벽돌	식	3,000,000원
			사무실	12㎡	컨테이너박스	식	300,000원
			창고(지1층)	88.13㎡	철근콘크리트	250,000원	22,032,500원
			건물계단(바깥)	19.28㎡	철근콘크리트	-	4,193,400원
	간접보상비 별도						
						합계	270,616,205원

물건재평가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영업권)	구조·규격 (업종)	수량	제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평균금액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도림동	236 -1	작업장	블럭및목재스레이트	257.48㎡	130,000	33,472,400	120,000	30,897,600	125,000	32,185,000	
	236 -2	주거	연외조 및 목조기와 (목조대문포함)	172.46㎡	일괄	64,300,000	일괄	64,100,000	일괄	64,200,000	
		미당		1식	-	300,000	-	300,000		300,000	
		기름보일러		2대	-	주거에포함평가	-	주거에포함평가	주거에포함	주거에포함	
	236 -3	기중니무외 4종		5주					일괄	595,000	2005.12월 감정평가 아세아600,000, 대일590,000
	236 -6	공장	철근벽돌조 슬라브	240.02㎡	215,000	51,604,300	220,000	52,804,400	217,500	52,204,350	
		작업장(2층)	천막	166.35㎡	32,000	5,323,200	30,000	4,990,500	31,000	5,156,850	
		화장실	시멘트벽돌	4.29㎡	식	1,000,000	식	1,000,000	식	1,000,000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12㎡	식	300,000	식	300,000	식	300,000	
		창고(지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88.13㎡	130,000	11,456,900	120,000	10,575,600	125,000	11,016,250	
		건물계단(바깥)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9.28㎡	-	2,000,000	-	2,000,000	-	2,000,000	
									합계	168,957,450	2006.4월 공탁 137,351,370 2006.7월 추가공탁 31,606,080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7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동 597번지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개요
 - 아스팔트 포장 ----- A = 10.8a
 - 점토블럭 포장 ----- A = 5.04a
 - 흙관부설 및 접합 ----- L = 224m
 - 설계금액 : ₩123,611,000원(추정가액 112,250,000원, 부가가치세 11,225,000원, 시험비 136,000원) ⇒ 시험비는 계약시 낙찰금액에 합산합니다.
 - 기초금액 : ₩123,475,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07월 28일(금) 09:00~ 08월 07일(월요일)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08월 07일(월요일)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

달)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23,475,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005년도 말 경영상태 평가기준 : 부채비율 84.59% 유동비율 181.3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설과 토목팀(032-453-257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7월 2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고	시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33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신일해피트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세계건설(주) (대표자 : 권 용 환)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4-4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개발사업(2)지구 7블럭
- 연 면 적 : 169,345.21㎡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4층, 12개동, 828세대
- 사 업 비 : 299,622,880천원

4. 사업계획변경승인내용

- 발코니 확장(301세대)
- 기타 경미한 변경

5.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4. 11. 8 ~ 2007. 5. 30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34호

낙시어선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6. 7. 2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어선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낙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선원포함) 및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낙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낙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운항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나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가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구조설비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미끼(집어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상에 분뇨, 폐기물, 유류 등의 각종쓰레기를 투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자·치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타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행위 중 기상 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대피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소형 낚시어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낚시어선의 경우에도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에 따라야 한다. (3톤미만 어선은 의무착용)

제5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게시)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거 동고시의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갑판실 외벽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별표1과 같으며, 게시방법 예시는 붙임1과 같다.

③ 낚시어선업법 제11조제4항 규정의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동고시의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낚시어선업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낙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가. 게시방법

(1)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2) 색상

(가) 글씨 : 흑색

(나) 바탕 : 승선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은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나. 게시장소

당해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선정원 ○ ○ 명

승 객 준 수 사 항

1. 낙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행위 금지
2.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 주의사항 준수
3.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가무 행위 금지
4. 인명의 안전을 위한 설비 등을 파손하는 행위 금지
5. 기상 악화시 무리한 운항 요구행위 금지
6.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준수
(3톤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의무 착용)
7.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미끼 사용 금지
8. 해상에 분노, 폐기물, 유류등 각종쓰레기 투기 금지
9.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자·치어 포획 금지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35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7. 2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 업 명

- GS자이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자 : 조 창 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4블럭
- 대지면적 : 32,781.1m²
- 연 면 적 : 98,973.942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4층, 7개동, 500세대
- 사 업 비 : 208,956,000천원

4. 사업계획변경승인내용

- 건축면적 변경 : 5,512.225m² ⇒ 5,450.845m²
- 연면적 변경 : 98,949.688m² ⇒ 98,973.942m²
- 기타 경미한 변경

5. 사업시행기간(예정) : 2006. 8. 1 ~ 2009. 2. 28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453-27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고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가. 도시지역 : 1제곱미터당 811,000원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 해당없음

2. 적용기간 : 2006년 7월 12일 ~ 2007년 6월 9일